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3. 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1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17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4.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민원수수료 처리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수입증지 요금제기를 사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수입증지요금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수입증지요금제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안 제5조)
- 수입금 납입 (제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청구 규정(안 제8조)
- 기존 발행 수입증지 폐기 경과 규정(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2011.8월) 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방안」(2011.9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제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제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기 관리 책임자를 부서장으로 하고,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수입금은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제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제기 되어온
 - 종이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발생,
 -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 증지 구매시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금취

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제4조제1항1)에 근거하여 2011.11월부터 종이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1 호
----------	--------

제출연월일 : 201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수수료 납부방식인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종이수입증지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수입증지요금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무인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 시 수입금 납입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마. 종이수입증지 교환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안 제8조)
- 바.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규정을 둠.(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 15 ~ 2. 4,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고유번호

제5조(계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7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책임)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고시일	고시번호	책임자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총괄

구분		전일누계		금일		총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발 행	계						
	카드						
	현금						
결손							
수 입	계						
	카드						
	현금						

금일 발행 및 결손 내역

구분 (금액별)	발행		결손		카드		실발행금액(현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결 재	담당	팀장	과(동)장

붙임 : 일일전표 및 납부영수증 (별도첨부)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영등포구청장 귀하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